

포항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6년 6월 8일 / 포항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26년 6월 8일

다. 상정일자

○ 제330회 포항시의회(임시회)

■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(2026. 6. 18.) 상정 . 질의답변 . 토론 .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 : 박선영 환경정책과장)

가. 개정사유

-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에 따른 가축의 종류를 추가하고,
- 기존 가축사육시설의 축종보다 제한거리가 짧은 축종으로 변경을 가능하도록 하여 악취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축사 인근 주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정의 규정 신설(안 제2조제2호)
-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예외 규정 정비(안 제4조제2항)
 - 가축의 범위에 메추리 추가
-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 가능한 행위 규정 추가(안 제5조)
 - 배출시설 면적 증가 없이 악취저감시설을 갖추고 개축하는 경우와 천재지변에 따라 재축하는 경우
 - 허가 또는 신고된 면적 내에서 기존 축종보다 제한거리가 짧은 축종으로 변경하는 경우
- 가축사육 제한에 대한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는 규정 삭제(안 제6조)
-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'에 따른 자구 수정

다. 관련법령

-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조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김경희)

-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조정하여 인근 주민의 환경권 보장과 축산농가의 재산권 보호 간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,

○ 종합검토 결과

-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및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하여 지자체 조례로 일정 지역을 가축사육제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음.
- 개정안은 적법하게 허가·신고된 시설에 한해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·신고 등 절차를 거칠 경우 배출시설 면적 증가 없이 악취저감시설을 갖추고 개축하는 경우와 천재지변에 따라 재축하는 경우 및 허가 또는 신고된 면적 내에서 기존 축종보다 제한거리가 짧은 축종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려는 것으로, 이는 축산농가의 재산권 보호와 주민의 생활환경권 보장이라는 두 기본권이 충돌할 소지가 있을 것이라 예견됨.
- 이는 양립하기 어려운 두 기본권을 각각 최대한 보장하면서 행정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됨. 개정 후, 집행기관은 민원과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관리 및 환경 지도·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, 인근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갈등과 민원 등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의 요지 : 생략

5. 토론의 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